

[ 제182회 거창군의회 제1차임사회 ]  
2012. 4. 20.(금)

# 검 토 보 고 서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 2
-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9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현 재)

의안  
번호

2012-21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2. 4. 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4. 12.

### 2. 제안이유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을 위해 거창군 전 학교급식인원에 대하여 물품구매, 배송 등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12번지
- 다. 규모 : 연면적 1,347㎡ (지상2층)
  - 1층(1,054㎡) : 입하장, 냉장·냉동 창고, 소포장실, 출하장 등
  - 2층( 291㎡) : 사무실, 회의실, 식당, 탈의실 등
- 라. 위탁대상 업무
  - 시설 : 학교급식지원센터 1,2층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
  - 운영 : 37개 전 학교 물품구입 및 배송 업무
- 마.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단, 매년(연도말기준)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여부 재결정

바. 위탁운영 방식

- 공급품목의 가격, 생산공급업체 선정, 대행수수료율을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 물품구매, 배송 등 업무 일체 위탁
- 시설, 기계장비의 사용료 년 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내 사용료 징수 (사업초기 임을 감안 3년간 사용료 징수 유예)

사. 소요예산

- 내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비 예산은 필요치 않음  
(2012년 1회 추경예산 식재료비 5,873백만원 전액 삭감 반영)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 「학교급식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나. 예산조치 : 2013년 위원회 운영수당 등 반영 계획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을 위해 관내 전 학교 급식인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학교급식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86호, 2010. 7. 23,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6,6543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이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시행일 : 2011.10.04)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배농가·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2. 유통 및 공급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주 및 발주 관리
3. 거창교육지원청 및 관련 유관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4. 위원회, 거창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학교 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우수 식재료 생산 또는 학교급식 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⑥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제정) 1997. 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 01.14 조례 제1878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2. 4. 12.
- 나. 제출자 : 이성복·백범영·조기원 의원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4. 12.

### 2. 제안이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거창 농업인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직거래장터의 사업(안 제3조)
  -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참여자 모집
  -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정보수집
  - 직거래장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나. 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 설치(안 제4조 ~ 제10조)
  - 《구 성》
    -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2년
    -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군의원 1명, 농촌활력과장, 농업인단체 대표, 기타 전문지식인
  - 《심의사항》
    - 직거래 운영방향 결정

- 직거래 품목 및 판매가격기준설정
  - 기타 필요한 사항
- 다. 농업인직거래장터의 운영(안 제11조 ~ 제17조)
- 운영주체 :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법인에게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년,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 가능
  - 수탁자 의무 : 재산을 파손·망신했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 위탁취소 : 계약조건 위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등
  - 관 리 비 : 수탁자 부담
  - 운 영 비 :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라. 준용규정(안 제18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작성대상임
- 나. 입법예고(2012.04.13. ~ 04.17.)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유통비용과 각종 수수료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 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 경제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함으로써 적정가격 수준을 제시하고 일반 소매업체 판매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고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